

The Inter-Library Loan System for University Library Services—Analysis Evaluation of the Present System

大學圖書館奉仕를 위한 相互貸借에 관한 研究

—運營體制 確立을 위한 實態分析—

金 鎮 龍

漢陽大圖書館 司書

편집자주: 本稿는 1976年 2月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司書教育專攻 碩士學位 論文의 要約이다. 註와 參考文獻은 省略하였다.

I. 序 論

1. 研究의 目的과 必要性

大學圖書館은 大學의 教育和 研究目的을 遂行하기 위한 中樞的인 奉仕機關으로 大學社會의 모든 構成員에게 圖書館資料를 滿足스럽게 利用할 수 있도록 奉仕하는데 있다. 그러나, 오늘 날 學術文化의 發達로 每年莫大한 量의 文獻 및 情報氾濫은 先進諸國에서 最大規模의 圖書館으로서도 堪當할 수 없을 程度이며 現 우리나라의 各 大學圖書館 自體能力으로서 學生, 教授 및 研究者들이 要求하는 資料를 充分히 蒐集, 整理하여 提供한다는 것은 事實上 不可能한 것으로 認定되고 있다. 이와같이 獨自의인 大學圖書館의 資料缺如 狀態는 圖書館 機能을 제대로 發揮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大學教育의 目的達成에도 缺如를 招來할 것이다. 그러므로, 大學圖書館 奉仕에 必要한 資料를 充分히 갖추어 研究調查者에게 資料를 提供해 줄 수 있는 奉仕方法이 摸索되어야 하겠다. 이의 한 方法으로 大學圖書館 間에 必要한 資料 및 情報를 相互貸借함으로써 보다 緊密한 奉仕를 기할 수 있으며, 研究調查者들은 한층 넓은 範圍에서 學術研究에 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大學의 教育 및 研究活動은 活潑히 進行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한 大學圖書館의 機能을 充分히 發揮할 수 있게 될 것이다.

圖書館相互貸借란 “研究者가 必要로 하는 專門資料를 他圖書館에서 獲得하는 일에 援助하는 것이며 一般利用者가 圖書館의 施設未備로 달리는 利用할 수 없는 資料를 빌릴 수 있도록 協助하는 것이다.”라고 美國圖書館協會에서 規定지은 바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開發途

上國에 있는 나라는 人的, 物的 資源面에서 充分히 못한 實情이므로 이와같은 相互貸借의 定義로 보아 절실히 要請되는 制度이다. 그러나, 現在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에서 相互貸借制度를 實行하는 데에 많은 어려운 問題點이 提示되고 있는 實情이다. 本 論文에서는 圖書館相互貸借制度에 關하여 記述한 후 우리나라의 大學圖書館 奉仕에 있어서 相互貸借의 運營實態와 問題들을 檢討하여 보다 바람직한 相互貸借制度의 確立을 위한 改善方向을 提示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2. 研究의 方法

大學圖書館 奉仕를 위한 相互貸借의 制度運營에 관한 問題를 考察하기 위해서 文獻分析을 通해서 理論의 背景을 確立시키고, 質問紙를 使用하여 現在 大學圖書館에서 運營되는 相互貸借의 運營實態와 制度確立을 위한 效率的인 相互貸借方案에 對하여 調査分析하였다.

3. 研究의 範圍와 限界

本 研究에서는 大學圖書館 奉仕를 보다 積極的으로 運營할 수 있는 相互貸借制度에 있어서 制度 運營상의 問題點을 中心으로 考察하였으며, 우리나라 大學(校) 圖書館을 對象으로 質問紙를 作成하여 實態調査를 하여서 分析 檢討하였다. 이 研究를 위하여 韓國圖書館協會의 「韓國圖書館統計(1973年)」에 收錄되어 있는 全國의 大學校圖書館 中에서 調査對象 圖書館을 選擇하여 書信과 一部大學은 直接 訪問하여 調査하였다.

調査對象의 大學校圖書館 總70個館 中에서 質問紙에 應答하여 준 圖書館은 42個館으로 應答率은 60%를 나타냈다. 이 중 綜合大學이 16個館, 單科大學이 26個館이었다.

II. 研究의 理論的 背景

1. 相互貸借의 基礎理論

相互貸借란 「圖書館 相互間의 資料貸借」의 準말로 각기 所藏한 資料를 서로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이다. 오늘 날과 같이 出版量이 대단히 增加되어 情報의 洪水時代를 당하여 制限된 各 大學圖書館의 豫算으로는 必要한 모든 資料를 구입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미 絶版된 圖書나 古書같은 特殊한 資料는 少數圖書館에 偏重된 形態에서는 資料의 相互交流없는 研究調査者에게 圓滿한 圖書館奉仕를 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相互貸借의 運營은 여러 圖書館의 小規模 資料를 最大限度로 活用 可能케 하여, 現 우리나라 各 大學圖書館 모두가 資料의 不足現狀을 주고 있는 實情이므로 相互貸借制度를 確立함으로써, 大學圖書館 奉仕를 廣範圍하고 能動的이며, 效果的으로 遂行할 수 있는데 이 制度의 意義와 目的이 있는 것이다.

相互貸借制度의 必要性을 일찍 認識한 先進國家에서는 活潑한 相互協力으로 이 制度를 發展시켜 왔으며 圖書館 奉仕面에서 寄與하고 있다.

相互貸借가 最初로 이루어진 것은 16세기초 Paris 에 있는 Royal Library와 Rome의 Barberrni 間에 行하여 졌다는 記錄이 있으며, 이때는 認識不足으로 有名無實 하였던 것이다. 그후, 美國에서 처음으로 1876年 軍醫學圖書館에 實施되었고, 점차 그 必要性을 認識한 各圖書館이 實施하여 一般化 하였다.

獨逸에서는 일차대전 이전에 이미 相互貸借制度가 組織되어 왔으며, 1893년에는 Berlin 에 있는 Royal Library와 Prussia 大學圖書館들 사이에 相互貸借가 確立되었다. 1924年 3月 「獨逸貸借圖書輸送規則」이 制定되어 全國의인 規模에서 組織의으로 遂行하게 되었다.

英國에서는 1914년부터 部分的으로 實施되기 시작하였고, 1925년에 大學敎授協議會에서 大學圖書館間의 相互貸借을 위해 Joint Standing Committee 를 設立하여 Birmingham University의 圖書館을 本部로 75個의 大學圖書館이 參加하였다. 本格的인 相互貸借實施는 1964年 7월에 裁可된 新法 즉, 「公共圖書館 및 博物館法」의 制定에 따라 1965年 4월부터 施行되어 적극적으로 實施되게 되었다.

日本은 1927年 醫科大學附屬圖書館協議會(현재의 醫學圖書館協會)에서 처음으로 實行되었으며, 1929年 帝國大學附屬圖書館協議會, 1932년에는 全國高等諸學校圖書館協議會에서도 相互貸借에 對한 協議檢討가 이루어져, 그후 全國의인 組織으로 確大되었다.

韓國에서는 1964年경부터 相互貸借에 對한 必要性을

認識하기 시작하여 1967年 4月 6日 全國公共圖書館大會에서 公共圖書館 相互間에 相互貸借制度를 창설한 것에 합의와 함께 「圖書館資料 相互貸借協定案」을 採擇하였다. 그후 國立中央圖書館이 中心이 되어 大學·特殊圖書館間에 協議을 거쳐 1968年 11月 20日 15個館이 加入하여 相互貸借의 施行을 보게 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韓國醫學圖書館協議會에서도 相互貸借를 醫學圖書館間에 實施되고 있고, 또한 地域的으로 인접한 延大, 梨大, 西江大의 3個大學 代表者들 사이에 協約이 이루어져 現在 運營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韓國에서도 相互貸借가 일부에서 施行하고 있으나 制度·運營의 미비로 先進諸國과 같이 活氣있게 運營되고 있지 못하는 實情이다. 그러나, 相互貸借의 必要性은 다음과 같은 要因 즉 資料와 研究調査者의 激增, 財政(豫算), 施設 등 여러 要因으로 보아서 大學圖書館에서의 相互貸借制度는 積極적인 奉仕活動을 위한 必要한 制度로 完備히 運營될 수 있는 體制確立이 要請된다.

2. 相互貸借의 運營形態

先進諸國에서는 各圖書館間에 協力活動이 여러가지 形態로 이루어져 이제, 그 한 形態인 相互貸借制度는 모든 類型의 圖書館에서 公認된 活動으로 行하여지고 있다. 英國의 協力組織을 살펴보면 國立中央圖書館과 10個의 地域本部圖書館(스코트랜드를 포함하면 11個가 됨)의 協力組織에 의하여 運營되고 있다. 各 地域本部圖書館은 그 地域內의 公共, 大學, 專門圖書館이 加入하여 이들의 경제적인 지원으로 運營되며 國立中央圖書館은 이들을 연결하는 中心機關으로 地域本部圖書館과 國立中央圖書館을 통해 各種 圖書館間의 相互貸借가 全國的으로 實施되고 있다.

美國에서는 그 組織이 같은 類型끼리 (大學圖書館相互間, 公共圖書館相互間) 相互協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單一地域社會圖書館에서 다음엔 地域圖書館, 마지막으로 州單位로 擴大되며 이와 같이 하여 全國의인 組織網을 形成하고 있다. 現在는 통신상의 새로운 技術發達과 더불어 大學 및 研究圖書館과 公共 및 州立圖書館의 거리가 점차 줄어들어 다른 類型의 圖書館과도 相互協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相互貸借의 組織類型을 細分化하여 보면 館種別, 地域別, 專門別로 나누어 지는데 어느 경우나 組織體의 確立으로 各長短點을 조화있게 살려 協力活動을 效率化할 수 있는 組織體制로 整備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組織構成과 併行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規定으로 美國에서는 1917年 美國圖書館協會에서 「圖書館相互貸借實務規定」을 간행하였고 그후, 1952년에는 「一般相互貸借規定」을 制定하였다. 이것은 다시 1968年 National Inter-

Library Loan Code로 그 規定이 보완되어 現在 모든 圖書館이 이 規定을 使用하고 있다.

相互貸借規定은 制度運營을 위한 기초조건이 되기 때문에 各大學圖書館의 共同理解 아래 實施가 可能한 것이다.

相互貸借 規定作成에 있어 다음과 같은 內容 즉 利用資料의 範圍, 利用者의 範圍, 貸借手續과 返納, 經費負擔, 調整委員會, 利用方法, 등에 對한 새로운 研究檢討를 하여서 가장 效果의 相互貸借을 實行할 수 있는 方案을 摸索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相互貸借의 원활한 運營을 기할 수 있는 複寫서비스 활용문제에 대하여서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Ⅲ. 韓國 大學圖書館의 相互貸借 實態分析

1. 相互貸借에 對한 概況

첫째, 現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에서의 相互貸借 運營現況을 調査한 結果 응답한 42個 大學圖書館 중 23.8%가 公式의 相互協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76.2%가 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現 우리나라의 各大學圖書館의 實情으로 볼 때 보다 積極的으로 奉仕할 수 있는 相互貸借制度의 樹立을 摸索하여야 할 것으로, 現在 相互貸借을 안하고 있는 理由로는 職員의 不足이 53.1%로 가장 많은 理由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大學 經營者의 理解不足으로가 28.1%로 大學圖書館에서의 相互貸借遂行에는 專門司書의 增員과 大學當局의 積極的인 協助가 必要함을 指摘할 수 있겠다.

둘째, 相互貸借의 必要性에 對하여 調査結果 응답한 大學圖書館 전부가 認定하고 있었으며 그 理由로는 資料의 不足이 28.1%로 가장 많고 다음이 情報交換으로 57.1%로 되어 있다. 이는 大學圖書館의 相互貸借樹立이 時急함을 말해 주는 것으로 오늘 날 急激한 情報資料의 增加로 인하여 大學圖書館 奉仕에 있어서 研究 調査者들에게 消極的인 奉仕를 면치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相互貸借制度에 對한 認識도에 對하여 現 大學圖書館에 본 學生, 教授, 司書의 認識度 調査結果 學生은 모른다가 38.1%로 가장 많고, 教授는 조금안다 가 66.7%, 大學圖書館司書는 알고있다 가 71.4%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大學圖書館司書는 相互貸借에 對한 基礎知識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으로 大學圖書館에서의 相互貸借運營에는 밝은 展望을 내다 볼 수 있겠다.

넷째, 相互貸借의 利用指導에 對하여 調査結果 그 必要性은 전부가 認定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利用指導方法으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時間에가 42.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案內冊子が 35.7%로 되어 있다. 따라서, 學生에게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時間에 專門擔當司書의 指導와 더불어 案內冊子를 통해서 그 實效를 거둘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教授에게도 個別的이거나 역시 案內冊子를 통한 보다 積極的인 方法을 摸索하여야 할 것이다.

2. 相互貸借의 組織 및 規定

첫째, 組織單位 및 形態에 對한 調査結果 組織單位構成에 있어서는 全國的인 規模가 52.4%, 地域單位가 47.6%로 나타났으며, 組織形態는 大學相互間이 61.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大學·公共·特殊圖書館間이 30.9%로 되어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에서 相互貸借을 實施할 경우 우선 地域相互間에 건립한 協조로 점차 全國的인 規模로 大學圖書館間에 相互貸借制度를 運營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相互貸借의 業務管理에 對한 調査結果 參考室에서가 61.9%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여 주었으며 相互貸借 擔當者는 參考司書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 61.9%로 나타났다. 이 結果로 보아 參考室에서 相互貸借을 專門으로 擔當할 參考司書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 가장 能率的인 方法으로 볼 수 있다.

셋째, 相互貸借의 運營規定에 對한 調査結果 利用資料의 限界에 對하여서는 館外貸出이 制限된 資料도 複寫利用을 許可한다가 71.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大學圖書館 奉仕에서 研究 調査者가 必要로 하는 資料는 거의가 館外貸出이 制限된 경우가 많으므로 大部分의 圖書館이 複寫利用 方法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利用者의 範圍에 있어서는 學部學生, 大學院生, 教授가 64.3% 大學院生, 教授가 30.9%로 全大學構成員이 活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貸借期間은 2週日이 47.6%, 1週日이 40.5%로 大部分의 圖書館이 1~2週日을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相互貸借 運營時 必要한 經費負擔은 利用者負擔이 42.8%, 借入圖書館과 利用者가 共同負擔이 33.7%, 借入圖書館負擔이 16.7%로 되어 있다. 여기서 利用者負擔이 가장 많은 반응을 보인 것은 各大學圖書館이 예산면에서 넉넉치 못함을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보다 원활한 運營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借入圖書館과 利用者가 共同負擔하는 方向으로 制定함이 효율적인 方法으로 생각된다.

3. 相互貸借의 運營實際

첫째, 業務連絡方法 및 資料構成에 對한 調査結果 業務連絡方法은 전화가 47.6%, 우편이 42.9%로 전화와

우편 連絡方法이 비슷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가까운 地域內는 전화로, 먼 地域은 우편으로 連絡하는 方法을 취하면 원활하게 運營될 것으로 본다. 또한 相互貸借制度를 효율적으로 運營하기 위한 各大學의 特色있는 資料構成의 必要性에 對하여 大部分의 圖書館이 認定하고 있었으며 그 方法으로는 大學別로 指定이 7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大學의 特殊性을 고려 大學別로 指定하여 各 主題分野에 대해서 集中的으로 資料를 蒐集하는 方法을 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圖書館間의 協力 및 情報交換에 對한 調查結果 相互貸借를 實行할 경우 協力에서는 업무에 지장없는 범위에서 협조가 69%로 가장 많고, 협조적이 28.6%로 大部分 協肋할 뜻을 보여 주었다. 또한 資料檢索을 위한 情報交換에 對한 必要性을 認定하고 있었으며, 그 方法에 있어서는 신간목록을 년 1회 회원도서관과 교환한다는 57.1%, 신간목록을 수시로 교환한다가 28.6%로 大部分 圖書館이 年 1회 會員圖書館間에 相互交流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셋째, 複寫서비스 活用に 對한 調查結果 그 必要性을 認定하고 있었으며 理由로는 貸出禁止圖書의 活用可能이 가장 중요한 原因으로 指摘되고 있는데 이는 利用資料의 限界에서도 보여준 것과 같이 研究調查者의 資料要求에 보다 적극적으로 奉仕할 수 있는 方法으로 認定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現 國立中央圖書館 主管의 相互貸借規定에는 이에 對한 規定이 缺如되어 있는데 앞으로 大學圖書館에서의 運營規定 制定에 있어서는 삽입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4. 現 相互貸借制度에 對한 滿足度 및 運營狀況

첫째, 組織單位 및 形態에 있어서 調查結果 單位는 그저 그렇다가 61.9%, 形態는 그저 그렇다가 54.8%로 나타났다. 이 結果로 보아 現 組織에 對하여 滿足하게 생각치 않는 것으로 協力活動을 効率化할 수 있는 方法으로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貸借方法 및 手續에 對한 調查結果 方法은 그저 그렇다가 59.5%, 手續은 그저 그렇다가 49.6%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여 주었다. 이 結果로 보아 會員 圖書館間에 긴밀한 協力下에 보다 簡便한 方法이 摸索되어 야 할 것이다.

셋째, 貸借規定에 對한 調查結果 貸出資料限界는 부적당하다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여 주었고, 經費負擔, 貸借樣式, 貸借期間, 調整委員會規定은 그저 그렇다가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現制度의 規定에 對하여 滿足한 것으로 認定치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利用狀況에 對한 調查結果 대부분의 圖書館이

가끔 이용한다가 가장 많은데 그 不振한 理由로는 利用者의 理解不足과 자료檢索의 未備로 나타났다. 이는 利用指導方法에 있어서 消極的 方法的 結果로 볼 수 있으며, 보다 積極적인 方法을 摸索하여야 할 것이다.

IV. 結 論

大學의 教育和 研究目的을 遂行하기 위한 大學圖書館 奉仕를 보다 効率的으로 運營할 수 있는 相互貸借 制度에 對한 實態分析 結果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 다.

첫째, 現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의 相互貸借 樹立實態 는 극히 일부 圖書館에서 實施되고 있었으며, 그 必要性에 對하여서는 모든 大學圖書館이 肯定的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相互貸借의 組織, 形態는 全國의인 規模로 大學相互間에 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둘째, 相互貸借에 對한 規定問題에 있어서 各 項目 別로 보면 資料利用限界는 館外貸出이 制限된 資料도 複寫利用할 수 있도록 원하고 있었고, 利用者範圍에서는 學生(大學院生包含), 教授(教職員包含) 등 全 大學 構成員이 活用할 수 있도록 원하였고, 貸借期間은 2週日, 經費負擔은 利用者負擔으로 하기에 많은 반응을 보였다.

셋째, 相互貸借 運營時 必要한 業務連絡은 大部分의 圖書館이 우편, 전화의 方法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書誌交換은 消極的 狀態로 大部分의 大學圖書館이 정기간행물 및 綜合目錄 作成이 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各大學의 特色있는 資料構成은 大學의 特殊性을 살려서 大學別로 指定하는 方法에 많은 반응을 보였다. 利用方法에 있어서는 直接, 間接利用方法을 並行하는 方法을 택하고 있었다.

넷째, 現在 一部大學圖書館에서 運營되고 있는 相互貸借制度에 對하여 이상적인 제도로 인정치 않는 반응을 보였고, 그 利用狀況도 극히 不振한 狀態로 나타났다.

以上の 研究結果로 보아 相互貸借制度는 오늘 날 文獻 및 情報資料의 增加로 從來의 圖書館奉仕로는 大學圖書館의 機能을 發揮할 수 없음을 各 大學圖書館人들이 認定하고 있는 實情임으로 과거 自館의 圖書館藏書에 만 依存하여 奉仕하던 方法을 변화시켜 各 大學圖書館은 相互貸借制度를 確立하여 圖書館奉仕를 함으로서 現代 大學圖書館의 機能을 遂行할 수 있을것으로 본다. 이 制度의 確立을 위하여서는 大學當局의 積極적인 지원과 大學相互間에 긴밀히 協力하여 圖書館資源의 廣域開放, 廣域서비스라는 圖書館人들의 새로운 認識 아래 相互貸借制度의 組織體 確立이 요망된다.